

이 사 회 의 록

1. 회 의 의 종 류 :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2. 회의의 통지일자 : 2022. 12. 12(월)
3. 회의의 개최일시 : 2022. 12. 20(화) 18:30 ~ 20:00
4. 회의의 개최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393 동아마트1층(만리장성 수성점)
5. 재 적 이 사 : 김●식, 한 ●, 백●흠, 민●훈, 류●원, 최●민, 김●길, 조 ●
6. 회의의 참석자 : 의장 김●식
이사 한 ●, 백●흠, 류●원, 최●민, 김●길
7. 심의 안건
 - 제1호 의안 : 2023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2호 의안 : 2023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3호 의안 : 2023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4호 의안 : 2023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5호 의안 : 2023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제6호 의안 : 2022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7호 의안 : 2022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8호 의안 : 2022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9호 의안 : 2022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10호 의안 : 2022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11호 의안 : 선산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8. 회의 내용
 - 가. 성원보고 개회선언
 - 의장 김●식 : 법인정관 제8장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8명중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성원이 되었기에 사회복지법인 선산복지재단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 나. 의장 인사
 - 의장 김●식 :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의장을 맡은 대표이사 김●식의 인사와 더불어 심의안건에 관한 이사들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바라다.



다. 전차 회의록 접수, 승인

- 의장 김●식 : 2022년도 제4차 임시이사회 전차 회의록 승인 안전을 상정하고 의장이 낭독 후 이의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전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 승인하기로 선포하다.

라. 부의안전 상정 및 심의

- 의장 김●식 : 제출된 총11개의 부의안전 외 추가제출 안전 여부를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없습니다.' 라고 답하여 총11개의 부의 안전을 심의안전으로 선포하다.

- 《 제 1 호 의안 : 2023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 제 2 호 의안 : 2023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 제 3 호 의안 : 2023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 제 4 호 의안 : 2023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 제 5 호 의안 : 2023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 의장 김●식 : 2023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대구안식원,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 ① 예산편성 요령 : 예산의 목적 및 기본방침을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하다.

② 예산총칙

- 선산복지재단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2,900천원으로 한다.
-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22,700천원으로 한다.
- 대구안식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719,240천원으로 한다.
- 한우리보호작업장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27,809천원으로 한다.
- 성부정신수양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949,592천원으로 한다.

- 이사 백●흠 : 회의 자료에 근거한 상세한 설명대로 2023년도 선산복지재단과 그 산하시설들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잘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다. 2023년도 법인과 산하시설들 모두 계획한 예산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충실하게 잘 운영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류●원 : 이사 백●흠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의장 김●식 : 이사 백●흠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 석 이 사 : 이사 백●흠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선산복지재단 및 대구안식원,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부정신수양원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제 6 호 의안 : 2022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 제 7 호 의안 : 2022년도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
《 제 8 호 의안 : 2022년도 대구안식원 시설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 제 9 호 의안 : 2022년도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
《 제 10 호 의안 : 2022년도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

- 의장 김●식 : 2022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제2회·수익사업회계 제1회, 대구 안식원 시설회계 제2회, 한우리보호작업장 시설회계 제2회,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1. 추경예산의 주요내용

-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227,703천원에서 19,490천원이 감소한 208,213천원으로 변경
- 선산복지재단 수익사업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512,700천원에서 29,000천원이 증가한 541,700천원으로 변경
- 대구안식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2,601,295천원에서 451,295천원이 감소한 2,150,000천원으로 변경
- 한우리보호작업장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 1,306,871천원에서 219,264천원이 감소한 1,087,607천원으로 변경
- 성부정신수양원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액 2,840,760천원에서 88,117천원이 감소한 2,752,643천원으로 변경

- 이사 김●길 : 2022년도 법인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그리고 세곳의 산하시설에 대한 시설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역시 앞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규칙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잘 작성되었으며 회의 자료를 통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기에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최●민 :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의장 김●식 :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 석 이 사 : 이사 김●길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2022년도 선산복지재단 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 대구안식원, 한우리보호작업장, 성부정신수양원 시설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 제 11 호 의안 : 선산복지재단 정관변경(안) 심의 》

- 의장 김●식 : 법인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고 회의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다.

□ 제안설명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이 2021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선산복지재단의 정관 「제 6장 제31조」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선산복지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함.

신 · 구 정 관 부 칙 대 비 표

변경전의 정관 조문(현행)	변경후의 정관 조문(개정안)	변 경 사 유
제6장 존속과 해산	제6장 존속과 해산	
제31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이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1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6장 제31조 자구 수정

- 이사 한 ● : 의장의 구체적인 설명대로 해당 안건은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사항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나 심의가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하다. 또한, 우리 선산복지재단은 해당 법령과 무관하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장애인과 같은 사회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복지 법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다시한번 법인과 시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복지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 집단으로 꾸준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다.

- 이사 류●원 : 이사 한●의 의견에 많은 공감된다고 말하며 선산복지재단은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 최●민 :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재청하다.
- 의장 김●식 :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다.
- 참 석 이 사 : 이사 류●원의 동의안에 전원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선산복지재단 정관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 선포하다.

바. 폐회

- 의장 김●식 : 기타 토의사항 여부를 묻고, 없으면 폐회 동의 바라다.
- 이사 최●민 : 선산복지재단의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의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 김●길 : 이사 최●민의 폐회 동의에 재청하다.
- 참 석 이 사 : 전원 폐회를 찬성하다.
- 의장 김●식 : 선산복지재단의 2022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 의 폐회를 선언하다.

- 참석이사 전원이 아래와 같이 날인하다. -

의 장 김 ●



이 사 한



백 ●



류 ●



최 ●



김 ●

